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28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예지·김성원

김석기 • 박충권 • 박준태

윤상현 • 박수민 • 송석준

우재준 · 최수진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·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, 해당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, 전기 등을 제 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,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(이하 "특화단지"라 한다)에 공업용수,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, 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·군 또는 자치구(특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할 시·군 또는 자치구를 말한다)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

제29조의3(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제29조의3(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 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 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 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.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 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 용할 수 없다.

<신 설>

용도)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용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
>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 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 (이하 "특화단지"라 한다)에 공 업용수,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 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 치를 인가, 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・군 또는 자치구(특화 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할

시·군 또는 자치구를 말한다)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.